

##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안연월일 : 2025. 9.

제안자 : 기획재정위원장

#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| 의안명              | 의안번호    | 대표발의자<br>(제출자) | 발의일<br>(제출일) | 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배사업법<br>일부개정법률안 | 2201749 | 박성훈의원          | 2024. 7. 15. | 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7차<br>기획재정위원회(2024.11.13.)<br>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<br>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<br>정소위원회 회부 |
| 담배사업법<br>일부개정법률안 | 2202471 | 김태년의원          | 2024. 8. 1.  | 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7차<br>기획재정위원회(2024.11.13.)<br>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<br>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<br>정소위원회 회부 |
| 담배사업법<br>일부개정법률안 | 2202563 | 김선민의원          | 2024. 8. 5.  | 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7차<br>기획재정위원회(2024.11.13.)<br>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<br>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<br>정소위원회 회부 |
| 담배사업법<br>일부개정법률안 | 2202872 | 남인순의원          | 2024. 8. 16. | 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7차<br>기획재정위원회(2024.11.13.)<br>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<br>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<br>정소위원회 회부 |
| 담배사업법<br>일부개정법률안 | 2202898 | 한지아의원          | 2024. 8. 16. | 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7차<br>기획재정위원회(2024.11.13.)<br>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<br>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<br>정소위원회 회부 |

| 의안명              | 의안번호    | 대표발의자<br>(제출자) | 발의일<br>(제출일)  | 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배사업법<br>일부개정법률안 | 2204643 | 전진숙의원          | 2024. 10. 10. | 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경제재정소위원회 직접회부(2024.11.22.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배사업법<br>일부개정법률안 | 2205037 | 김준혁의원          | 2024. 10. 30. | 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경제재정소위원회 직접회부(2024.11.22.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배사업법<br>일부개정법률안 | 2205041 | 송언석의원          | 2024. 10. 30. | 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경제재정소위원회 직접회부(2024.11.22.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배사업법<br>일부개정법률안 | 2205149 | 최은석의원          | 2024. 10. 31. | 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경제재정소위원회 직접회부(2024.11.22.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배사업법<br>일부개정법률안 | 2205523 | 조은희의원          | 2024. 11. 13. | 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경제재정소위원회 직접회부(2024.11.22.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배사업법<br>일부개정법률안 | 2211315 | 김민전의원          | 2025. 7. 7.   | 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25.9.8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 회부 |
| 담배사업법<br>일부개정법률안 | 2211785 | 송재봉의원          | 2025. 7. 28.  | 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25.9.8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 회부 |

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(2025. 9. 22.)에서 위 12건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.

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25. 9. 25.)에서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1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,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, 제세부담금 등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을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,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하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.

또한, 담배소매인 지정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소매인 명의 대여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매인 지정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.

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가. 담배사업법의 목적에 ‘담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’을 추가함(안 제1조).

나. 담배의 정의를 ‘연초의 잎’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‘연초나 니코틴’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함(안 제2조제1호).

다.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16조제3항).

라.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함(안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제8호).

마.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‘연초의 잎과 담배’에서

‘연초·니코틴 및 담배’로 확대함(안 제30조제1항).

#### 4. 부대의견

- 가. 정부는 담배정의 확대에 의한 합성니코틴 제조·유통 관련 영세 사업자들의 업종 전환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.
- 나. 정부는 담배정의 확대에 의한 합성니코틴 제조·유통 관련 영세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이 법 시행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합성니코틴의 흡연효과 및 과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및 부담금 부과체계 마련을 검토한다.
- 다. 정부는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이 포함됨에 따라 과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유사니코틴 확산에 따른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인체 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제품의 유통·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및 니코틴 원액 유통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한다.

##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발전을”을 “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연초(煙草)의 잎을”을 “연초(煙草)나 니코틴을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약사법」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예외로 한다.

제16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·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(같은 주민등록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)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그 가족(같은 주민등록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)

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  
소매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

제30조제1항 중 “연초의 잎과”를 “연초·니코틴 및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담배의 정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의  
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  
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소매인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제4항과 제17조제1항  
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매인이 타인에게 자기의 명  
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특례) ① 이 법 공포 당시 제2조제1호 개  
정규정에 따른 담배(종전 규정에 따른 담배는 제외한다)를 직접 소  
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  
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6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여  
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신청  
시 제16조제2항제3호 중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 
경우 제2조제1호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(종전 규정에 따른 담배는 제

외한다)만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이 법 시행 이후 2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 도과시 소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.

④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해당 담배 외에 종전 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.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1호나목을 삭제한다.

제47조제6호나목과 같은 조 제7호나목 중 “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”을 각각 “제1호다목에 따른”으로 한다.

②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(목적)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조(목적) -----<br>-----<br>-----<br><u>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</u> 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br>1. “담배”란 <u>연초(煙草)의 잎을</u>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, 빨거나, 증기로 흡입하거나, 씹거나,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. <단서 신설> | 제2조(정의) -----<br>-----.<br>1. ----- <u>연초(煙草)나 니코틴을</u>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<u>다만, 「약사법」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예외로 한다.</u> |
| 2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6조(소매인의 지정) ① . ②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6조(소매인의 지정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<br><u>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우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신 설>

③ (생 략)

제17조(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)

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~ 7. (생 략)

<신 설>

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·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(같은 주민등록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)
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그 가족(같은 주민등록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)

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

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17조(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)

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② · ③ (생 략)</p> <p>제30조(몰수와 추징) ① 제27조 ·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 죄에 관련된 <u>연초의 잎과</u> 담배 는 몰수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| <p><u>경우</u>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0조(몰수와 추징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연초 · 니코틴 및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